

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

으뜸자산운용(주)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

제 정 : 2021.06.3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으뜸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 58 조 제 1 항에 의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,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및 그 외 관련 법규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, 투자자문계약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

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나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 다만 법 제 86조, 법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-65 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.

다. 판매회사 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
라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보관, 관리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
마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일반사무관리업무 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
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
2. 수수료

가. 선취판매수수료 :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.

나. 후취판매수수료 :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.

다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금전.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자산에 귀속된다.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집합투자기구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새로운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이 경우 관련 법규, 운용자산의 특성과 규모, 총비용의 수준 등을 고려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기존 집합투자기구와 운용상의 중요 변경사항이 없는 등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의 합의와 품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 또는 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보수나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제6조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또는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설명의무) 회사는 법 제 47 조 (설명의무) 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53 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과 함께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(“전자서명법” 제 2 조 제 2 호 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, 우편,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투자광고) 회사는 투자광고 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 57 조 제 2 항 및 법 시행령 제 60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시 등)

- ① 회사는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 58 조 제 1 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 58 조 제 3 항에 따라 이 규정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(2022.02.09)로부터 시행한다.